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457
----------	-------

발의연월일 : 2025. 7. 11.

발 의 자 : 모경중 · 이성윤 · 박희승
신영대 · 정동영 · 양부남
민형배 · 위성곤 · 안호영
김윤덕 · 조인철 · 안도걸
박지원 · 이원택 · 권향엽
한병도 · 이용우 · 임호선
윤준병 · 민홍철 · 이광희
김교홍 · 허성무 의원
(2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은 국가중요시설 등 공공시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경비 업무를 수행하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공공기관 민원실, 복지 현장 등에서 공무원을 향한 폭력 및 위협 행위가 발생하면서 이들 공무원에 대한 보호와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청원경찰의 직무 범위 및 경비구역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타 법령상 청원경찰이 특정 현장 단속업무를 수행할 경우, 현

행법상 정해진 경비구역과의 불일치로 인해 법적 혼란과 실무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의 청원주가 경비구역 외에서 직무수행이 필요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법령 간의 충돌을 해소하고 청원경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의2 신설).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원경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배치된 청원경찰의 직무 특례)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배치된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비구역 외의 장소에서 직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청원주는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경비구역 외의 장소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신변보호가 필요한 경우
2. 경비구역이 아닌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사업장 또는 시설의 경비가 한시적으로 필요한 경우
3.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공식 행사의 행사장에서 질서를 유지하거나 위험발생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집회 또는 시위는 제외한다.
4. 전시·재난 등에 의한 기관 소산(疏散)과 이를 대비한 훈련에 따라 이전된 장소에 배치가 필요한 경우

5.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재산 등을 운반하기 위한 호송이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요건·절차 및 준수사항 등 청원경찰의 직무 특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3조의2(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배치된 청원경찰의 직무 특례)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배치된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비구역 외의 장소에서 직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청원주는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경비구역 외의 장소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u> <u>1.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신변보호가 필요한 경우</u> <u>2. 경비구역이 아닌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장 또는 시설의 경비가 한시적으로 필요한 경우</u> <u>3.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공식 행사의 행사장에서 질서를 유지하거나 위험발생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만, 「집회 및 시</u>

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
외집회 또는 시위는 제외하
다.

4. 전시·재난 등에 의한 기관
소산(疏散)과 이를 대비한 훈
련에 따라 이전된 장소에 배
치가 필요한 경우

5.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 중요재산 등을 운반하기
위한 호송이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
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요건
·절차 및 준수사항 등 청원경
찰의 직무 특례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